

의안번호	2219251
의 퇴 인	서천호의원
회 답 일	2026.9.3.
추계번호	26D281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1조제7항 (투표용지와 투표 함의 작성)	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 기표칸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각 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1조제7항 (투표용지와 투표 함의 작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투표용지 기표칸의 최소 규격 확대(안 제151조제7항)

- 개정안은 투표용지 기표칸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
로 하는 최소 규격을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－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칸·후보자칸 사이의 여백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중앙선거관
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은 가로 1.5센티미터,
세로 1.5센티미터로 운영되고 있음
 - － 투표용지의 규격은 정당칸·후보자칸의 수와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, 기표칸의 규격은 각
칸의 세로 길이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선거의 종류와 후보자·정당 수에 따라 선거별
로 달라짐

- 개정안에 따라 기표칸이 확대되면 정당칸·후보자칸의 세로 길이가 늘어나 투표용지의 규격이 커지게 되므로 투표용지 인쇄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, 투표지분류기·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등 선거장비의 규격 적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이 기표칸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투표용지 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선거별 규격의 변화 폭, 규격 변화에 따른 투표용지 1매당 인쇄단가의 증가분, 투표지분류기·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등 선거장비의 규격 적합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투표용지의 인쇄단가는 1매당 42원임(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사업설명자료 2-1 참고)
 - 해당 단가는 투표용지 1매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규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규격 확대분을 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